

중경 임시정부가 농지개혁에 미친 영향

Influence of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on the Land Reforms in the Liberated Korea

임수환 _국가안보전략연구원

Lim, Su Hwan _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초록

미군정이 애초의 계획이었던 신탁통치의 실현에 실패하면서, 건국의 제도형성에 있어 한국인 지도자들의 영향이 커졌다. 반탁진영의 한국인 지도자들이 새 나라의 제도건설을 주도하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건국강령에 제시한 토지개혁 개념이 한국 농지개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경시절인 1941년 신국가건설 계획을 담아 건국강령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토지국유제, 사인의 고용농업 금지, 경자유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토지개혁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다. 건국강령과 토지개혁 개념은 미군정 하에서 활동하던 임시정부 지도자들에 의하여 민주위원과 과도입법위원의 정책과 헌법초안으로 계승되었으며, 미군정이 작성하여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에 제출된 토지개혁법안에서는 자본주의에 적응하는 변형을 겪었다. 미군정이 끝나고 건국한 대한민국 정부가 마련하는 농지개혁법은 사인의 고용농업 금지와 경자유전을 전승했고 토지국유제는 그러지 않았다.

농지개혁으로 소작료 부담에서 벗어난 소농가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농지개혁은 경제적, 교육적으로 삼균주의 실현에 기여했다. 토지개혁을 포함하여 건국강령의 경제조항들이 헌법에 반영되었고, 임시정부 지도자들이 다수 신정부에 참여했다. 건국강령에 제시된 토지개혁 개념이 건국전후 지도자들로 하여금 토지문제에 대하여 개혁적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 주제어: 농지개혁,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Abstract

As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failed to implement their original plan of trusteeship on Korean Peninsula, Korean leaders who fought against trusteeship made substantial influence in building institutions of the new Korea.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ncept of land reform presented by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in 1941 was carried by the influential Korean leaders when they designed institutions of the new Korea.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Chongqing pronounced the Principles and Plans for National Reconstruction in 1941 with principles of land reform included. Principles of land reform consisted of nationalization of lands, prohibition of labor-employment in private farms, land-to-the-tillers.

Leaders of Provisional Government carried the PPNR on to the policies and constitutional proposals, prepared by the Representative Democratic Council under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Lat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wrote its own land reform bill, which conforms market value in compensation to the landowners.

The land reform law passed by the ROK legislature prohibited private farms from hiring labor and distributed lands to the tillers, but did not nationalize lands. The land reform law cut compensation rate for landowners by half from the US Military Government's reform bill. Korean leaders did away with the conformation to the market value as soon as the US influence weakened at the withdraw of forces. Korean government even failed in due compensation to the landowners during the Korean war.

The tiny family farm system, created by the land reforms, provided material base for children of poor farm families with opportunity to attend school: equal opportunity for schooling was one of three principles to be achieved in the newly independent State according to the PPNR.

There were many factors pressuring the new Korean government for the land reform around the time of independence; the distribution of lands owned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e land reform in the North Korea, demands of Peasants Union. But not every government actively respond to the political demand for land reform. It was the presence of conceptual framework of land reform agreed upon by the Cabinet Committee of the PROK Government that enabled leaders of newly independent government to go forward to make reforms.

□ Key words: Land Reform,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National Reconstruction

I. 서론

한국은 대만과 함께 전후 식민지 독립한 국가들 중 산업화를 성취한 대표적 개발사례로 꼽힌다. 두 나라의 산업화는 국제시장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국제자

본에의 종속을 피하여 비교적 균등한 소득분배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중산층을 육성하여 민주화의 조건을 성숙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발전이론가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

많은 연구자들이 두 개발사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특히 그 산업화 과정에서 보여 준 개발국가의 역할과 농지개혁에 주목했는데, 전자에 비하여 후자에 대한 연구는 진척이 느리다. 대만의 농지개혁은 국민당 정부 주도로 1949년부터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문서자료들이 잘 보존되어 경험적 연구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해방 후 미군정과 반탁운동,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전쟁을 겪는 와중에 농지개혁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혼란스럽고 자료유실이 심하여 경험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다.

한국 농지개혁에 대한 학계의 논쟁은 우선 농지개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식민지 해방 당시 농지개혁 대상 농지 중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분배된 것이 전체의 40% 남짓에 불과할 만큼 토지방매가 성행했고, 농지재분배가 영세농가의 대량창출을 결과해서 농업근대화를 역행했다는 것이다. 농지개혁 실패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 원인을 농지개혁 추진세력과 동기에서 찾았다. 추진자였던 미군정의 동기가 한국농업의 근대화 보다 반공진영의 전략적 이익에 우선되어 있었고 미군정의 사회적 기반세력인 지주세력이 자기 이익을 위해 내용적 부실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농지개혁의 실효성을 인정하는 긍정론자들은 이승만 정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지개혁을 강력히 추진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논문은 한국 농지개혁의 추진에 있어 중경시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영향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공산주의 세력의 압박에 직면한 미군정의 전략적 대응을 강조하는 다수설이나 이승만 정부의 공을 평가하는 소수설 모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건국강령에 표출된 바와 같이 토지개혁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것이 미군정하 자문 또는 대의기구로 조직된 민주의원과 과도입법위원의 정책과 헌법초안으로 계승된 끝에 대한민국 초대헌법 경제조항에 실리게 된 건국사의 계보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제2절에서는 농지개혁의 추진주체가 미군정인가 한국정부인가에 대한 기성 학설들을 정리했다. 제3절에서는 자유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적 농지개혁 개념을 한국에 적용하여 임시정부가 구상한 토지개혁 개념을 분석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제4절에서는 중경 임시정부가 1941년 발표한 건국강령이 한국 농지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했다. 제5절에서는 중경 임시정부가 한국 농지개혁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II. 미군정 주체설과 한국정부 주체설

황한식은 농지개혁이 “미군정, 지주적 상층부 및 보수적 관료집단의 주도에 의해”(황한식 1982, 78) 이루어진 결과 “봉건적·반봉건적 토지소유는 농지개혁에 의해 확실히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꺾멸되어 버렸거나 일소되어 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황한식 1982, 84). 김준보는 “남한의 농지개혁.....그것은 단적으로 미군정 밑에(*si*) 추진된 것이었다. 크게 보아서 미국의 세계정치적 방위목적의 일환으로 이 땅에 실현을 본 것이었다.”고 하고 “동서대립의 냉전이 박두한 가운데 서구진영의 안정을 위하여 이보다 효과적인 정책은 없다고 본 것이 미국측 전략이었다”는 견해를 펼치고 있다(김준보 1987).

김성호 등은 문서자료의 검토를 통해서 농지개혁의 주체가 미군정정이 아니라 한국정부라는 긍정론을 폈다. 동 연구는 먼저 미군정 당국이 농지개혁에 관심을 갖게 된 구체적 경위를 밝혀냈다.

미국 국무성은 1946년 전반기까지 미소합의에 의한 한반도 통합임시정부 수립에 기대를 걸고 귀속농지 처분을 반대했다. 그러나 1946년 3월 20일부터 5월 2일 까지 열린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로 끝난 이후 국무성의 한반도 전략에 전환이 일어났고 그 결과 미군정 당국이 중도 진보세력을 흡수하는 남조선과 도입법의원을 조직하기 위해 좌우합작을 주선하게 된다. 중도우파의 김규식과 중도좌파의 여운형을 필두로 하는 협상에서 농지개혁을 포함하는 좌우합작 7원칙이 도출되고 이에 기초하여 민선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관선의원을 지명하여

입법의원이 조직되었다.¹⁾ 미군정청은 좌우합작 협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농지개혁법안을 작성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제출하게 된 것이었다(김성호 외 1989, 325-353).

그것은 좌우합작 정부수립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었다. 당시 미군정청에게 좌우합작 정부가 필요했던 이유는 그것이 소련과의 협상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미군정이 세계정치적 방위목적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농지개혁을 추진했다는 김준보의 해석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조건이었다.

미군정청이 제출한 농지개혁법안이 입법의원들의 심의회피로 무산되었는데, 이를 두고 한민당의 지주출신 의원들이 계급적 이익에 따라 농지개혁을 지연시켰다는 해석이 있지만(심지연 1984, 79), “한민당은 토지개혁법안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실시하기 위해 반대한 것으로 보아야 합당”하다는 김성호 등의 반박도 있다(김성호 외 1989, 444). 김성호 등은 “미군정은 토지개혁법을 단독으로 제정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336). 신병식도 당시 미군정으로서의 지주계급, 일제하의 경찰, 관리, 월남민의 협력과 함께 재정적 기반으로서 신한공사를 통한 현물 소작료 수입이 필요했기 때문에 토지개혁에 소극적이었다고 설명했다(신병식 1988, 74-75).

미국정부는 1947년 7월 15일 미소공동위원회가 완전 결렬되자 신탁통치 계획을 포기하고 1947년 9월 17일 한국문제를 유엔총회에 정식의제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엔총회가 한국독립을 위한 총선실시를 결의한 것이 11월 14일이다. 과도입법의원의 농지개혁안 초안이 완성된 것이 한국문제의 유엔총회 상정을 요청하기 6일 전(9월 11일)이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12월 23일) 한 달여 전에 이미 유엔총회의 총선결의가 있었다. 미군정청은 당시까지 2년여의 통치기간을 허비하고 통치권 이양이 임박해서야 농지개혁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이미 권력누수가 심하여 입법의원을 설득시킬 수도 없었고 단독제정할 엄두도 낼 수 없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1) 김규식은 상해 임시정부 외무총장 겸 파리 강화회의의 전권대사로 활약하다가 임정을 떠난 후 1944년 중경 임시정부에 합류하여 부주석을 역임했다. 여운형은 상해 임시정부 외무차장으로 1925년 임정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일외교를 벌였다(김준엽 1989, 82). 그 후 그는 임정을 떠나 국내에서 활동했다.

김성호 등은 건국 후에도 한민당 의원들이 지주계급의 이익에 따라 농지개혁법의 통과를 지연시켜 토지방매의 시간을 벌었다는 견해에 대하여도 반박자료를 내 놓았다. 이승만정부가 농지분배를 위한 행정작업을 “개정법령이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이 공포되기 이전에 이미 착수”했고, 시행령의 공포를 기다리지 않고 분배를 집행했다는 사실의 문서적 입증이(김성호 외 1989, 598-667). 국회 심의과정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가 지연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병준은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의지를 의심케하는 사료를 발굴하여 2003년 논문으로 발표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중이었던 1950년 10월 농지개혁 1년 연기를 결정했다가 미국정부기관 경제복구위원회(Economic Recovery Committee)의 반대성명에 반응하며 8일만에 번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정병준은 논문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지주계급의 압력으로 농지개혁을 중단시켰다고 분석하고, 개혁중단이 불러올 농민여론의 반발 가능성을 염려하는 미국 정보보고서들을 인용하며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게 결정번복 압력을 행사한 전략적 동기를 설명했다(정병준 2003).

이승만 대통령이 지주계급의 압력에 굴복하여 농지개혁 1년 연기를 결정했다는 미국 정보보고서의 분석은 8일만의 결정번복에 지주계급의 반발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장된 것이었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미국정부가 전시상황에서 한국의 농지개혁이 자국의 세계 전략적 이익에 합치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과 한국정부 역시 개혁중단결정의 번복으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지주계급의 이익으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대정부의 의회내 다수파인 한민당 세력이 농지개혁의 조건에 대하여 행정부와 이견을 보이기는 했지만, 한민당은 애초부터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국내조직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지주출신 구성원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한편 정치학자 김일영은 김성호 등의 공동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이승만은 정부 수립 초기부터 농지개혁과 귀속재산 불하에 적극적이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이승만의 농지개혁 추진행동이 “지주도 자본가도 농민도 아닌 자신(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이해와 함께 자본가의

이해를 대변”했다고 보나파르트주의적 구도 속에서 농지개혁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주체적 역할을 설명했다(김일영 2006, 297-298).

Ⅲ. 농지개혁의 성격에 대한 평가

각 정치세력은 각자가 가진 토지제도 개념에 따라 행동한다. 미군정은 한국의 토지제도 건설에 대하여 자유주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소련점령군은 사회주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일제 하 한국인들이 구상했던 토지개혁 개념도 나름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실시된 농지개혁의 성격을 보면 어떤 정치세력의 영향을 받았는가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학자 강정구는 북한의 농지개혁은 혁명적이었고 남한의 농지개혁은 자유주의적이었다고 특징짓는다. 그가 말하는 혁명적 농지개혁은 “지주와 소작인 간의 반봉건적 착취관계와 자본주의적 착취관계가 파괴되고 제거된” 개혁을, 자유주의적 농지개혁은 “반봉건적 착취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사적 농업 노동시장과 상품시장, 신용시장의 존재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적 착취관계는 여전히 존재하는” 농지개혁이다(강정구 1989, 29).

강정구는 농민의 계급역량이 미군정의 탄압으로 약화됨으로 해서 남한의 토지문제는 혁명적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자유주의적 농지개혁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강정구 1989), 그는 ”거의 모든 남한 농촌에 지방 인민위원회가 구성되고, 남한 농촌의 절반가량은 일정시기동안 그것의 행정통제 아래 있었으므로 질서유지는 말할 것도 없고 지주에 대한 농민의 위치가 압도적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농민의 계급역량은 10월 민중항쟁 사건에 따라 1946년 말 이후 상당히 저하되었다“고 설명했다(강정구 1989, 296-297).

북한당국이 1946년 2월에 실시한 토지개혁은 사유토지를 몰수하여 국유화한 후 경작농민들에게 경작권을 분배하는 형식을 취했다. 강정구는 북한의 1946년 토지개혁이 시민사회 내의 자체 동력에 의해 일어났으며, “반봉건적 착취와 자본주의적 착취 양자들” 제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혁명적 개혁”이었다고 설명

했다(강정구 1989, 309).

소련군 점령하의 북한에서는 1946년 2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시인민위원회가 결성되어 3월 6일 토지개혁법령을 발표하여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안에 완료되었다. 토지개혁이 완료된 뒤 김일성을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최고지도자로 추대하는 작업이 본격화되었으며, 토지개혁 후 불과 4개월 사이에 북조선노동당의 당세는 10배 이상으로 확대되었다(서동만 2005, 161-168). 북한 노동당은 토지개혁과 6·25전쟁을 통하여 지배력을 확보한 다음 1953년 농업집단화를 실시한다. 러시아 혁명 당시 볼셰비키들이 토지분배를 미끼로 농민들을 선동하고 내전을 통해서 독재권력을 공고화한 후 농업집단화했던 혁명전략이 북한에서 차례로 재현된 것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 프로그램으로서의 토지개혁은 결국 집단농장 창설과 농민동원을 통한 산업화로 전개되는 한 과도적 조치에 불과하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따른 사회주의 건설은 사유농지 뿐 아니라 의회제도와 복수정당제도도 모두 폐지한다. 이렇게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타도하고 사적자본을 폐지한 ‘사회주의’ 사회는 시민사회가 자율성을 상실하는 국가사회주의 체제를 낳게 되고, 인민은 당-국가체제의 억압 아래 자유를 잃고 심한 경우 노예적 삶을 살게 되는 것이 20세기 이래 역사적 경험이다.²⁾

강정구는 남한의 농지개혁이 반봉건적 착취구조는 파괴했지만 자본주의적 착취구조는 제거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자유주의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농지개혁이 창출한 한국의 농업은 영세소농으로서 도시자본과의 불평등 교환관계에 빠질 수는 있어도 생산관계에서 자본의 착취대상이 될 수는 없었다. 엄격한 소유규모 상한선의 규제로 인하여 자본주의 농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차단되고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하여 자유주의 정치세력을 지탱해 줄 능력도 부족하다는 면에서 자유주의적이라고 부르기에 미흡하다.

농지개혁에 대한 자유주의적 접근을 이해하기 위해 맨체스터 가디언이 1945

2) 노예적 삶의 가장 전형적 예가 소련의 정치범 수용소와 북한의 관리소라 할 것이다. 북한주민의 노예적 삶에 대해서는 UN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Commission of Inquiry 2014 보고서를 참조(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2014).

년 9월 26일자 사설에서 전후일본의 농지개혁에 대한 미군정의 자유주의적 동기를 소개한 글을 보자: “농지개혁은 일본개혁의 제일보이며 농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은 일본의 공업에 대한 저임금노동의 급원을 단절하고 일본군의 징병력을 줄이는 것이며 한편 농민의 구매력의 증가는 국내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나아가서는 대외수출과 침략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미국의 압박만이 일본민주화에의 유일한 길일 것이다”(정영일 1967, 95).

맨체스터 가디언의 사설에 실린 논조는 당시 일본을 통치하던 맥아더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읽고 농지개혁 실시를 결심하게 만든 문건에 실린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맥아더가 1945년 11월에 읽었던 문건은 점령군 사령부 자연자원부로부터 받은 애치슨-피어리 메모였으며, 이 메모의 모체는 그 해 5월 1일 피어리가 작성한 일본점령정책 제안서 12와 13이었다. 제안서 12, 13은 농지개혁으로 일본인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극단적 민족주의의 영향을 제거하고 자유주의적 사상과 민주주의적 과정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Schwartzberg 1993, 203).

클라이드 미첼은 신한공사 총재에서 사임한 이듬 해 쓴 논문에서 “한국인 대지주들이 유용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했으며, 그들의 자본과 능력이 산업 및 상업분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들의 토지를 몰수하거나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사 들어서 그들을 거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Mitchell 1949, 152). 그는 미군정이 세운 토지개혁안의 상환 및 보상 가격이나 신한공사 매각농지 가격인 평년수확량의 30할도 당시 시세에 부합하여 책정했다고 밝히고 있다(145). 신한공사 농지 매입자 자격심사에서도 경작자의 소작료 및 양곡공출 기록만을 고려했다는 것이다(151). 경제외적 요소를 배제하고 시장가격을 존중했을 뿐 아니라 지주와 자본가를 파트너로 여기는 사고가 모두 영미전통의 자유주의적 특성을 보여준다.

자유주의적 토지개혁관은 한국인들에게 생소한 것이었다. 일제강점기 이래 한국인들이 전개해 온 토지개혁사상으로는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개혁주의 계통이 있을 뿐 자유주의 계통은 결여되었다. 사회주의 사상운동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정치적, 사상적 패권 하에 다양성을 잃어 갔으므로 사회주의 토

지개혁은 북한에 건설된 농업집단화로 대표된다.

사회민주주의는 원칙적으로 토지국유를 주장하지만 미국의 독립자영농 전통의 영향을 받는 사회개량주의와 함께 실학과 토지개혁론의 계승을 표방하고 소농보호정책과 협동조합론을 강조하는 등 상황에 따른 신축성을 보인다. 두 유파의 공통성에 기반하여 방기중은 해방후 한국의 토지개혁론을 주도한 사회민주주의와 사회개량주의 토지개혁론자들을 중도적 입장의 진보적 민족주의 계열로 분류하고 있다(방기중 2001, 113). 방기중의 분류에 따르면 건국강령을 기초한 조소앙, 입법의원 토지개혁안과 신정부 농림부 농지개혁안 작성에 참여했던 이순탁, 강진국 등이 모두 진보적 민족주의 계열에 속한다.

방기중은 토지국유와 무상몰수를 주장하던 개혁론자들 중 박건웅, 이순탁 등이 미군정 하 입법의원 토지개혁법안 입안에 참여하면서 유상매수의 토지개혁론으로 방향전환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³⁾ 그리고 그는 “유상매수론은 그것이 어떠한 내용을 취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지주자본의 산업자본화를 수용하는 것이었고 지주세력과의 일정한 타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한다(115).⁴⁾

토지국유화 포기의 이념적 성격은 무엇인가?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수단으로서 토지국유화 원칙을 고수하지만,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경우는 꼭 그렇지 않다. 사회민주주의 운동은 마르크스주의 이외의 사상계보까지 포괄하며 개별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발달해 왔는데, 서독 사민당은 1959년 고데스버그 강령을 채택하면서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요구하는 대신 생산수단 국유화가 추구하던 목표를 다른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하는데 이르렀다(Reschke et. al. 2013, 90-92).

사회개량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순탁은 자유주의적 요소들과 사회민주주의가 양립가능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 유파의 조소앙도 1950년

3) 박건웅은 중경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시절 김성숙과 함께 조선민족해방동맹에 속해 있었다(김준엽 1989, 135). 이순탁은 일제하 연희전문 상과 교수로서 사회민주주의, 사회개량주의 노선을 신봉했다.(홍성찬 1997; 방기중 2001).

4) 방기중은 자기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입법책임자 박건웅의 취지 설명 중 “토지개혁이라는 것은.....자본주의 사회발전에 있어.....가장 필요하고 필연적인 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한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방기중 각주 59).

4월 「삼천리」지에 발표한 글에서 “우리는 최초로 토지대가를 연평균 생산량의 10할을 5년 분할상환을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15할 5년으로 낙착되었으니 소기의 목적은 달치 못하였으나 30할 10년 안에 비하면 많은 진보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토지구유제만을 고집하고 있지 않다(조소양f 1979, 136-137).

애초 사회민주주의적 성격을 띠었던 한국인 토지개혁론자들의 개념은 미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자유주의적 변용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국가사회주의와 달리 정치적 다원주의 허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양립할 수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IV. 농지개혁에 대한 임시정부의 영향

해방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표자는 김구주석이었고, 이승만은 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이었다.⁵⁾ 미군정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한 적이 없었지만, 이승만, 김구 등 임시정부 지도자들이 개인자격으로 귀국하자 그들을 중심으로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을 조직하여 자문기구로 활용하였다.

미군정과 임시정부는 각자의 국가건설계획을 갖고 있었고, 두 개의 계획은 상반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담고 있었다. 전자의 국가건설계획은 신탁통치안에 있었고 후자의 그것은 건국강령에 담겨 있었다. 신탁통치라는 국가건설계획에서 토지개혁은 논리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아니었다. 건국강령은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균등을 추구하는 삼균제도를 국가건설 개념으로 채택했다. 삼균제도에서는 토지개혁이 경제적 균등의 논리적 연장선상에 있는 필수정책으로 위치

5) 이승만은 31운동 이후 결성된 상해 임시정부 국무원 국무총리로 임명되었다가 다시 임시의정원에 의하여 1919년 11월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1925년 임시의정원에 의하여 탄핵되어 미국에서 독자적인 조직을 이끌고 독립외교를 벌이다가 1941년 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에 선임됨으로써 임시정부와의 공식적인 연계를 재개해서 미국정부를 상대로 임시정부 승인외교를 벌였다. 그가 1945년 국내에서 출간한 『건국과 이상』에는 임시정부와 김구주석에 대한 지지가 분명히 표명되어 있다. 김구는 상해 임시정부 시절 참여한 이후 임시정부를 떠난 적이 없는 인물로 주석으로서 중경 임시정부를 이끌었다(김준엽 1989, 72-133; 정병준 2007; 이승만 1945).

한다.

신탁통치계획은 1943년 카이로회담에 참석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구상에서 시작되어,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미국의 한반도 전후처리 정책으로 채택된 것이다(FRUS 1943, 291-455; 1945, 560-826). 일본을 점령한 맥아더사령부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뒷받침했던 극단적인 민족주의의 온상을 제거하기 위해 토지개혁을 단행했지만(Schwartzberg 1993, 203), 한국을 통치한 하지장군의 군정은 토착의 민족주의 자체를 불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⁶⁾

임시정부 지도자들은 반식민지 투쟁을 반만년의 민족과 국가 전통을 잇는 국가재건운동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민족사적 전통과 서구에서 발달한 근대적 제도를 함께 감안하는 독자적 국가건설을 지향했다(조소앙 1979a,c,d, 139-146, 148-153, 180-183). 그들은 국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국가건설의 개념을 카이로선언 2년 전(1941)에 건국강령으로 발표했다.

대한민국건국강령은 제1장 3절에서 “고규(故規)와 신법(新法)을 참호(參互)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임”이라 하고, 제3장 6절에서 “건국시기의 헌법상 경제체제는 국민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전체의 발전과 국가를 건립보위함에 연환관계를 가지게”(제3장 건국6)한다고 하며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으로서 대생산기관의 국유화와 더불어 토지문제에 대하여 “토지의 상속·매매·저압·전양·유증·전조차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 사인의 고용 농업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토지는 자력자경인에게 분급함을 원칙으로하되 원래의 고용농·자작농·소지주농·중지주농등 농인지위를 보아 저급으로부터 우선권을 줌”이라고 명기했던 것이다(조소앙 1979c, 152-153).

건국강령 총강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삼균제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는 6절에서 “보통선거제도를 실시하여 정권을 균하고 국유제도를 채용

6) 당시 미국인들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믿고 있었던 가치관은 기실 백인우월주의 및 기독교적 획일주의와 결합되어 있었다. 당시의 미국사회는 아직 남부지역의 흑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유색인종에게 이민문호가 닫혀져 있는 등 인종주의적 편견을 벗지 못한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종교적으로도 개신교의 지배력이 압도적이었다. 루이 하르츠는 봉건적 유제가 없는 미국사회의 특성으로 인해서 자유주의적 신념에 찬 도덕적 획일주의가 팽배하고, 미국인들이 전시에 절대적 자유주의(absolute liberalism)나 미국제일주의(America first)의 사고에 빠지게 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Louis Hartz 1955).

하여 이권을 균하고 공비교육으로써 학권을 균하며”라고 설명되어 있다. 7절에서는 “임시정부는...혁명적 삼균제도로써 복국과 건국을 통하여 일관한 최고공리인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과 독립·민주·균치의 3종방식을 동시에 실시할 것임”이라는 의지를 확인하고 있다.

건국강령은 정치제도에 대하여 복국기라는 과도기를 거쳐 건국기에 도달하면 민주주의 헌정을 시행하여 인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중경의 임시정부에는 당과 국가가 일체화된 소비에트 체제나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와 달리 한국독립당이 여당 역할을 하지만 그 외에 여러 정당과 정치동맹들이 야당으로 존재했다. 정치, 경제, 교육에서의 삼균제도는 다양한 이념성향을 가진 정당과 정치동맹들 사이에 합의된 공통분모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건국강령의 내용에는 자유주의적 가치도 포함되어 있고 사회주의적 가치도 포함되어 있지만 정치적 다원주의가 보존된다는 점에서 불세비즘 전통에 따라 일당독재와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는 구별된다.

토지개혁 개념을 포함하여 건국강령에 담긴 국가건설의 계획은 미군정 하에서 활동하던 임시정부 지도자들에 의하여 전승된다.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이 1946년 2월 23일 회의에서 결정한 임시정책은 제1항에서 “전국민의 완전한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평등의 원칙을 기초로 한 독립국가의 균등사회를 건설함”으로 시작한 후, 제9, 10, 11항에서 토지문제를 다루었다. “(9) 모든 몰수 토지는 농민의 경작능력에 의존하여 재분배함”, “(10) 대지주의 토지도 동일한 원칙에서 재분배함(현소유권자에 대하여는 적당히 보상)”, “(11) 재분배된 토지에 관한 대가는 국가에 장기적으로 분납함” 등의 내용을 담아서 임시정부건국강령을 계승하면서 토지개혁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조선일보 1946년 3월 20일). 미군정이 조직한 자문기구로서 민주의원은 이승만이 의장, 김규식과 김구가 부의장을 맡았는 등 임시정부 지도자들이 지휘부를 형성하고 있었다.

삼균제도와 토지개혁 개념은 민주 의원이 마련한 헌법초안에도 실렸다. 민주 의원이 마련한 헌법초안인 대한민국임시헌법은 제1, 2조에서 민주공화국과 주권재민을 밝힌 후 제5조에서 국민의 생활균등권을 규정하여 삼균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토지조항으로는 제5조 4항에서 “토지사유의 제한과 농민본위의 경작

권확립”을 규정하고 있다.

미군정은 민주의원의 지도자 이승만과 김구가 반탁운동을 주도하자 민주의원을 해체하고 중도적 정부를 구성할 목적으로 여운형과 김규식을 필두로 하는 좌우합작 협상을 주선했다. 이렇게 도출된 좌우합작 7원칙에 기초하여 과도입법위원을 조직한 미군정은 7원칙에 포함된 토지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박건웅, 이순탁 등에게 입안을 위촉하였다.

박건웅과 이순탁이 작성한 토지개혁법안은 농지소유 상한선을 3정보로 정하고 농지를 매수당한 지주에게는 연간소출의 2할씩 15년간 분할보상하고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는 평균소출의 2할씩 15년 동안 분납하는 유상몰수 유산분배 원칙을 적용하였다. 이 법안은 1947년 12월 23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의원들의 심의보류로 무산되었다.

남조선과도입법위원의 헌법초안 조선임시약헌 역시 제1, 2조에서 민주공화정체와 주권재민을 밝히고 제4조에 생활균등권을 명기했다. 4조 4항에는 토지문제가 언급되어 있는데, “농민본위의 토지재분배”라고 하여 민주의원 헌법초안에 있던 “토지사유의 제한” 부분이 삭제되었다(고려대학교박물관편 2009). 앞서 언급된 방기중의 분석처럼 미군정 남조선과도입법위원에 제출된 토지개혁법안이 유상매수론을 반영했던 것처럼 당시 작성된 헌법안의 토지개혁 개념에도 자본주의 국가건설노선을 반영하게 된 것이다. 조선임시약헌은 남조선과도입법위원에서 1947년 8월 6일 의결되었으나 미군정장관의 인준보류로 발효되지 못했다.

한국인들은 1948년 5월 10일 유엔감시하 총선거를 치루고 헌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했다. 새 헌법이 농지개혁을 명시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건국과 함께 농지개혁은 새로운 추동력을 얻게 되었다(박명림 2008, 436).

임시정부 인사들은 미군정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통하여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1948년 헌법제정을 주도했다. 헌법학자 유진오의 역할은 이들 건국 지도자들의 지휘 하에서 기초안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유진오가 헌법초안을 기초할 때 참고로 했다고 회고록에 밝힌 자료목록 중 대한민국임시헌법과 조선임시약헌상의 경제조항은 건국강령의 내용이 계승된 것이고, 그 외에 미국정착 자료인 조선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와 The Constitution

of Korea, 인공계열의 민주주의민족전선의 시안(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에는 토지개혁 등 구체적 경제정책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유진오의 참고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괴뢰정권안)은 아직 자료 미발견 상태이나 북한정권이 1948년 제정한 헌법에도 주요산업의 국유화와 토지개혁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건국강령과의 공통점이 발견된다. 결국 초대헌법 경제조항을 모아 놓은 제6장은 건국강령에서 계승된 것이고 그 사상적 원천은 조소앙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서희경 외 2007, 103).

유진오는 후일 헌법제정 동기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는 경제문제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자본주의국가 체제에 편향함을 회피하고 사회주의적 균등 경제의 원리를 아울러 채택함으로써,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의 장점인 각인의 자유와 평등 및 창의 가치를 존중하는 한편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케 하고 그들의 균등생활을 보장하라는(sic) 사회주의적 균등경제의 원리를 또한 존중하여 말하자면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라는 일견 대립되는 두 주의를 한층 높은 단계에서 조화하고 융합하라는(sic) 새로운 국가형태를 실현함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유진오 1953, 254).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두 주의를 조화-융합한다는 것은 유진오의 독창적 발상이 아니고 조소앙에 대한 추종이다(신우철 2008, 437).⁷⁾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에 의하여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농에 의해서 자행되는 계급독재를 회피하여 단합된 민족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이 조소앙 국가이론의 요체이며 그의 삼균주의가 삼균제도로 반영된 것이 건국강령이었다(조소앙 1979b, 215-216).

건국강령의 토지개혁 개념 중 토지국유화 부분은 삭제되고 경자유전의 개념만 건국헌법에 반영되었다. 방기중의 분석처럼 과도입법위원의 농지개혁안 작성 이후 농지개혁 개념은 자본주의적 적응과 변형을 겪은 것이다.

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초대대통령에 선출된 이승만은 농림부 장관에

7) 유진오는 이렇게 회고했다. “저자 등의 원안에 나타난 우리헌법의 기본정신 - 우리나라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병용한다는 원칙은 아무도 이를 문제시하거나 의문시함이 없이 그대로 통과되었다. 대개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은 저자 등의 창안이 아니라, 헌법초안 작성 당시에 저자 등이 참조한 여러 가지 자료에서 귀납적으로 추출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유진오 1953, 28).

조봉암, 기획처장에 이순탁을 기용하여 농지개혁을 서둘렀고, 조봉암은 강진국을 농지국장에게 임명했다. 이순탁과 강진국은 임정출신 박건용위원장이 이끄는 과도입법의원 산업노동위원회의 토지개혁안 작성에 참여했던 사회개량주의 토지개혁론자들이었다(방기중 2001).⁸⁾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정과 달리 지주보상에 별로 집착하지 않았다. 건국 후 제정된 농지개혁법은 지주에 대한 보상을 미군정이 구상했던 평년수확의 30할에서 15할로 축소했다. 평균수확량 기준으로 보상지가 15할 상환지가 12할의 안을 농림부가 제출했으나 한민당이 주도하는 산업위원회는 애초 미군정측 법안과 같이 보상 및 상환지가를 연소출의 30할로 하는 안을 가지고 심의했다. 그러나 국회 내 소장파들의 반발과 국회 내 친이승만 세력의 견제로 보상 및 상환지가를 15할로 조정안 이 통과되었다(김일영 2006). 개정법률에 따르면 경작농민은 연평균 소출의 15할 지가를 연3할씩 5년간 상환하면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이므로, 애초 과도입법의원 안 보다 상환지가는 반으로 상환기간은 1/3로 줄어들어 농림부안에 근접한 조건이다.

수배농가의 상환부담을 경감시킨 것은 빈농들의 권익을 보호한 조치이며 농지소유 상한선을 3정보로 정하고 소작을 금지한 것은 새로 창출된 영세농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빈농보호와 영세농보전 제도들은 지주제 재발 방지 뿐 아니라 자본주의 농장 출현 가능성까지 사라지게 만들었다.

지주들은 지가보상에 표시된 곡물가치의 법정가액으로 보상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정부는 전시 인플레이 하에서 법정가액을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해서 지주들에게 평가 절하된 가액을 지불했다. 지주들의 전업에 대한 정부의 주선실적 또한 유명무실한 것 등을 볼 때, 정부는 지주계급 보호에 무관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주들은 6·25전쟁 중 보상으로 받은 지가증권을 추심해서 피란지 생활비로 탕진해 버리고 계급으로서의 생존을 끝내고 말았다(홍성찬 2001).

8) 사회개량주의 토지개혁론은 경자유전, 지주제 폐지 등에서는 사회민주주의 토지개혁론과 입장을 같이 하지만 자본주의 소유원리와 경제체제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당시 미국정부나 미군정 관리들의 사고방식과 융화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방기중 2001, 108-109).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건국강령에 실려 있던 토지개혁 개념들 중 토지국유제는 미군정 당국의 영향 하에 유상몰수론으로 대체되었으나 경자유전의 원칙과 사인의 고용농업 금지는 1948년 건국헌법과 1949년 농지개혁법으로 전승되었다. 농지의 재분배와 지주제도 폐지를 통해 창출된 영세소농체제 속에서 다수 농가가 소자산가로서 새 출발하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게 된 상황은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시작으로 도입된 보통선거제도와 함께 정치/경제/교육에서의 균등이라는 삼균제도의 실현에 이바지했다.⁹⁾

그러나 건국강령에 담겼던 토지개혁 개념이 농지개혁으로 축소되면서 산지에 대한 국유화가 논의되지 못했다. 농지개혁이 시행과정에서 사찰토지에 대한 분배 예외조치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바람에 토지의 많은 부분에서 전근대적 소유관계가 해소되지 못하는 한계도 보였다(유진채 1993).

V. 결론

미군정 시대 임시정부 출신 지도자들이 주도하던 남조선대한국민민주의원이 발표한 임시정책이나 헌법안(대한민국임시헌법)은 건국강령의 토지개혁 개념과 내용을 반영했다. 미군정청의 토지개혁법안이 유상몰수론을 채택하여 토지국유론을 대체하고, 과도입법의원이 마련한 헌법안(조선임시약헌)도 토지국유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농민본위의 토지재분배”라는 규정 속에 토지개혁론의 전통은 이어졌다. 1948년 대한민국헌법은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하여 토지개혁 개념을 농지개혁으로 축소시켰지만 새정부의 국회를 통과한 농지개혁법이 3정보 소유상한과 소작금지를 정하면서 건국강령상의 사인의 고용농업 금지도 계승되었다. 토지개혁 개념은 건국강령으로부터 건국헌법을 거쳐 농지개혁법에 이르기 까지 전승과 변화를 보이면서 시계열적 계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9) 권병탁(1984)은 농지개혁이 소작농민들의 자제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열어 주어 한국사회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미군정 치하에서도 민주위원의 지도부를 구성한 이승만, 김구, 김규식이 임정 지도자들이었고, 과도입법위원의 여운형도 상해 임시정부 참여자였으며, 미군정치의 토지개혁법안 입안의 책임자 박건웅도 중경 임시정부에서 중도좌파로 활동한 인물이다. 건국강령이 임시정부 내 좌우파 지도자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건국계획이었으므로 포괄적 범위의 임정 참여자들이 지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다가 해방정국이 미국과 소련 간의 신탁통치 합의를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양분된 결과 반탁세력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과 소련의 신탁통치안을 배척하고 들어선 건국의 지도자들이 임시정부 건국강령을 국가건설 계획으로 삼았으며, 토지개혁 역시 그 주요 정책으로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건국강령의 토지개혁 개념은 미군정의 개입으로 토지국유제가 유상몰수로 대체되고 지주보상이 시장가격에 맞추어 평균소출 30할로 책정되는 등의 변형을 겪는다. 지주가 산업자본가 또는 상업자본가로 변신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군정이 종식되고 한국정부가 서서 농지개혁법안을 심의하자 지주보상율이 30할에서 15할로 반감된다. 미군정이 한국 농지개혁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때 지주보상이 강조되고 토지국유제 개념이 버려지는 등 농지개혁의 자유주의적 또는 자본주의적 성격이 강화되고, 미국의 개입이 약화되었을 때 다시 지주보상이 감소되고 빈농보호가 강화되는 등 건국강령에 담긴 토지개혁 개념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을 보였다. 전시 한국정부는 지주보상을 부실화하여 지주계급의 몰락을 방지하기까지 했다.

요약컨대, 미군정청이 1947년 작성한 토지개혁법안과 1948년 3월 귀속농지 처분이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 추진에 법적 행정적 선례를 남긴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토지개혁의 개념은 이미 1941년 건국강령에 제시되어 있었다. 임시정부 지도자들이 귀국직후부터 토지개혁 정책을 발표하고 초대헌법에 농지개혁 조항을 명문화하여 한국정부로 하여금 농지개혁을 추진토록 하는데에는 건국강령이 계도적 역할을 했다.

- ▶ Submitted : 2015. May. 26.
- ▶ Reviewed : 2015. May. 28.
- ▶ Accepted : 2015. May. 28.

References

- Bang, Ki Joong. 2001. "Nongjigachyeog ui Sasang Jeontong gwa Nongjeonginyeom." Hong, Sung Chan, ed. *Nongjigachyeong yeongu*. Yeonsedaehakgyo Chulpanbu.
- de Janvry, Alain, "The Role of Land Reform in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and Politic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3(2): 384-392, 1981.
-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The Conference at Cairo and Teheran, 291-455, 1943.
-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Moscow Conference of Foreign Ministers, 560-826, December 16-26, 1945.
- Hartz, Louis. 1955. *The Liberal Tradition in America*. New York: A Harvest Book.
- Hong, Sung Chan. 1997. "Hyojeong Isuntak ui Saengae wa Sasang." *Yeonsegyeongjeyeongu*. 4(2): 119-146.
- _____. b. 2001. "Nongjigachyeok Jeonhu ui Daejiju Donghyang." Hong, Sung Chan, ed. *Nongjigachyeok Yeongu*. Yeonsedaehakgyo Chulpanbu.
- Hwang, Han Sik. 1982. "Hanguk Nongjigachyeokyeongu(I)." *Busandaesangdaenonjip*. 44: 71-89.
- Jo, So Ang. 1979. "Yeonhapgukooui e daehan Uri ui Gidae wa Yogu." Samkyunhakhoe, ed. *Soangseonsaengmunjip Sang*. 180-183, Hwaetbalsa.
- _____. b. 1979. "Hangukdongnipdang Danguihaeseok." Samkyunhakhoe, ed. *Soangseonsaengmunjip Sang*. 215-216, Hwaetbalsa.
- _____. c. 1979. "Daehanmingukgeongukgangnyeong", Samkyunhakhoe, ed. *Soangseonsaengmunjip Sang*. 148-153, Hwaetbalsa.
- _____. d. 1979. "Hangukgwangbokgun Chongsaryeongbu Seongnipbogoseo." Samkyunhakhoe, ed. *Soangseonsaengmunjip Sang*. 139-146.
- _____. e. 1979. "Na ui Chulmaiyeu wa geurigo Jeonggyeon." Samkyunhakhoe, ed. *Soangseonsaengmunjip ha*. 126-131.
- _____. f. 1979. "Chagi Chongseongeo wa Yeoui Jeonggukgwon." Samkyunhakhoe, ed. *Soangseonsaengmunjip ha*. 131-141.

- Jung, Byung Jun. 2003. "Hangung Nongjigachyeong Jaegeomto: Wallyosijeom- Chujindongnyeok · Seonggyeok." *Yeoksabipyong*. 65: 117-157.
- _____. b. 2007. "Taebyeongyangjeonjaenggi Lee Seungman-Junggyeongimsijeongbu ui Gwangye wa Yeondae Ganghwa." *Hanguksayeongu*. 137: 295-335.
- Jung, Young Il. 1967. "Jeonhu Hangungnongjigachyeong e gwanhan Ilgochal." *Gyeongjeonjip*. 6(2): 77-112.
- Kang, Jung Gu. 1989. *Jwajeoldoen Sahoehyeongmyeong: Mi Gunjeongha ui Namhan-Pillipin gwa Bukannyeongu*. Yeoreumsa.
- Kim Il Young. 2006. "Nongjigachyeong eul Dulleossan Sinhwaui Haeche." *Haebang Jeonhusa ui Jaesik* 2. Chaeksesang.
- Kim, Jun Bo. 1987. *Nongjigachyeong ui Hyeondaejeong Uui*. Hangukaksurwon.
- Kim, Jun Yup. 1989. *Jangjeong2: Na ui Gwangbokgunsijeol Ha*. Nanam.
- Kim, Sung Ho · Jeon, Kyung Sik · Jang, Sangh Wan · Park Seok Doo. 1989. *Nongjigachyeongksayeongu*. Hangungnongchongyeongjeongyeonguwon.
- Koryeodachakgyobangmulgwan, ed. 2009. *Hyeonmin Yujino Jeheonheonbeom Gwangye Jaryojip*. Koryeodachakgyochulpanbu.
- Kwon, Byung Tak. 1984. "Nongjigachyeong ui Gwajeong gwa Gyeongjejeokgiyeo." *Nongeopjeongchaengnyeongu*. 11(1): 191-207.
- Lee, Seung Man. 1945. *Geonguk gwa Isang*. Hansong: Gukjemunhwahyeopoe, Gungnipjungangdoseogwan Maikeuropilleumjaryo.
- Mitchell, C. Clyde. 1949. "Land Reform in South Korea", *Pacific Affairs*, 22(2): 144-154.
- Nongsusanbu, ed. 1974. 1970 Nongeopsenseoseu.
- Park, Myung Rim. 2008. "Heonbeop, Gukgaujje, Geurigo Daetongnyeong Leadership: Geongukeonbeop gwa Jeonhuheonbeob ui Gyeongjejohang Bigyoreul Jungsim euro." *Gukjejeongchinonchong*. 48(1), 429-454.
- Reschke, Michael, Christian Krell, Jochen Dahm et al. 2013. *History of Social Democracy*. Berlin: Friedrich Ebert Stiftung.
- Schwartzberg, Steven. 1993. "The "Soft Peace Boys": Presurrender Planning and Japanese Land Reform", *The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2(2): 185-216.

- Seo, Dong Man. 2005. *Bukjoseonsahoejuuichejeseongnipsa 1945-1961*. Seonin.
- Seo, Hee Kyung · Park, Myung Rim. 2007. “Minjugonghwajuui wa Daehanminguk Heonbeop Inyecom ui Hyeongseong.” *Jeongsimmunhwaeyeongu*. 30(1): 77-111.
- Shim, Ji Yeon. 1984. *Hangukyeondaejeongdangnon*. Changjak gwa Bipyeongsa.
- Shin, Byung Sik. 1988. “Hanguk gwa Daeman ui Tojigachyeong Bigyoyeongu.” *Hanguk gwa Gukjejeongchi*. 4(2): 29-97.
- Shin, Woo Chul. 2008. *Bigyoheonbeopsa. Beommunsa*.
-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2014. *Report of the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Yoo, Jin O. 1953. *Heonbeopaewi*. Iljogak.
- Yu, Jinchae. 1993. “Iljeha Sachaltoji ui Soyugwangye Yeongu: Chungbuk Beopjusa Sarye reul Jungsim euro.” Koryeodaehakgyo Nongyeongyeongjehakgwa Baksahagwinonmun.